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

《 검토 보고서 》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04. 2. 13.
-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2. 제정사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여
-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수급자가 자활능력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
-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 제정내용은

가. 기금의 조성(조례안 제2조)

-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의 출연금
-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-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-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-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-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

나. 기금의 용도 (조례안 제3조)

-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-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단,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.)
-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

다. 기금운용심의(조례안 제5조)

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기능의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.
-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
-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결산
-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

4. 검토의견

- 이상에서 검토 보고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준칙(안)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동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.
 - 먼저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을 보면
 - 기금은 일반회계 및 서울특별시출연금,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,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,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, 생업자금 및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.
 - 이 기금의 주요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기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 바
 -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일반회계 출연금 조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심의 시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일시에 기금 확보 보다는 연도별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 - 다음은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.
 -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비용 외 3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기금의 목적에 상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
 - 조례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
 -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이 유사한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보여집니다.
-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시 준칙(안)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전반적인 사항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,

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4. 3. 2.

보고자 : 박창수